

의안 검토 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2. 건 명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불 임 참 조
4. 검 토 의 견 : 불 임 참 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사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각종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분기 또는 월의 개시 10일 전으로 할 수 없으나,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함(안 제5조)
- 마. 과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수업료 등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가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어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학교·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고, 휴학자에 대하여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부득이한 경우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입학, 편입학,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 징수방법을 정하였으며,
-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당해 분기 또는 월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으나,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 오납된 경우 전액 반환하며, 반환 사유를 명시하고, 퇴학처분 및 자퇴자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음.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 하되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
- 다만, 유아교육법 및 초등교육법이 지난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이 늦어져 신속한 교육행정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 이라고 사료됨.